

대전지방법원 2019. 10. 2 선고 2019가단10217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성창재

피고A

변론 종결 2019. 9. 18.

판결 선고 2019. 10. 2.

주 문

1. 피고는 B,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8. 3. 14. 접수 제2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임성실

별지